

# 마음리더십 전문가 자격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한국교사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마음리더십전문가가 인정하는 「마음리더십전문가」의 자격 1급, 2급의 자격검정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음리더십전문가」라 함은 본 센터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코칭, 리더십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3조(구분) 마음리더십전문가의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마음리더십전문가 1급
2. 마음리더십전문가 2급

제4조(응시자격)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1급, 2급의 응시자격은 1, 2를 말한다.

1. 마음리더십전문가 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학원에서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코칭, 리더십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연수 300시간, 감수성훈련 체험 96시간, 사례 슈퍼비전 6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교사힐링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마음리더십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연수 150시간, 감수성훈련 체험 48시간, 사례 슈퍼비전 3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교사힐링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③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교사힐링센터장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가. 외국에서 마음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대학의 관련 분야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마음리더십 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 실적을 남긴 자

2. 「마음리더십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학에서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아동청소년, 코칭, 리더십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연수 150시간, 감수성훈련 체험 48시간, 사례 슈퍼비전 3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교사힐링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제3장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제5조(자격검정과목과 자격검정방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경력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과목을 부과한다.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	주요 내용
마음리더십 전문가1급	필기 (객관식)	리더십, 상담, 코칭, 인간관계, 마음치유 이론과 실제	○ 리더십, 상담, 코칭, 인간관계, 마음 치유·관리 이론 ○ 마음리더십의 실제
	실기 (경력서류심사)	경력의 내용	○ 본 자격 교육연수 300시간 이수 ○ 감수성훈련 96시간 이수 ○ 마음리더십 사례 슈퍼비전 60시간 이수 (사례 종류 및 시간: 강의 사 례, 개인상담 혹은 코칭 사례, 집단 상담 시행 사례에 대해 각 20시간 이상 슈퍼비전 이수)
	면접	면접	○ 전문성 ○ 자질 ○ 수련 정도/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	주요 내용
마음리더십 전문가2급	필기 (객관식)	마음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 마음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실기 (경력서류심사)	경력의 내용	○ 본 자격 교육연수 150시간 이수 ○ 감수성훈련 48시간 이수 ○ 마음리더십 사례 슈퍼비전 30시간 이수 (사례 종류 및 시간: 강의 사 례, 개인상담 혹은 코칭 사례, 집단 상담 시행 사례에 대해 각 10시간 이상 슈퍼비전 이수)
	면접	면접	○ 전문성 ○ 자질 ○ 수련 정도/자격증

제6조(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7조(연수와 기관 수련과정) 1급, 2급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 4·5·6조의

연수시간과 기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 마음리더십전문가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센터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 제4장 자격의 관리 · 운영조직

제10조(자격심사 전형위원회)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자격심사전형위원장은 본 센터의 대표가 겸임한다.

제11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한국교사힐링센터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12조(자격검정인력) 본 센터의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전형위원회」는 한국교사힐링센터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교육, 상담, 심리, 복지, 코칭,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자격심사전형위원장이하 자격관리사무국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사무국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3조(자격검정조직의 업무분담) 자격검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자격관리사무국장은 자격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 담당 전반을 관리·운영한다.

1. 자격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자격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②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③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와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자격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⑤ 자격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자격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③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② 자격취득자 관리와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검정기준) 본 센터의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 기준은 마음리더십전문가로서 마음리더십 교육훈련 및 상담코칭, 자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 종목	등급	검정기준
마음리더십 전문가	1급	1) 지식 : 마음치유 및 인간관계 이론과 실제의 이해, 상담심리 및 코칭리더십, 교육학적 자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함 2) 기능 : 양질의 마음리더십 교육훈련, 개인 상담과 코칭, 집단상담의 시행, 마음리더십 적용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마음리더십전문가 2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2급	1) 지식 : 마음리더십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함 2) 기능 : 양질의 마음리더십 원리와 기법에 대한 이해, 마음리더십 적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제15조(규정개정)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한국교사힐링센터 이사회에서 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자격시험 및 시행세칙은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자격의 정의)

자격규정 제4조와 5조, 6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상담심리학, 심리학, 코칭심리학, 교육학, 교육상담, 복지학, 리더십 관련 분야 전공 중에서 마음리더십전문가의 자격으로는 애매한 분야는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마음리더십전문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센터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제3조(시험 시기)

자격시험의 횟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2월에 시험을 시행한다. 시험 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한국교사힐링센터장이 공고한다.

## 제4조(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1인이 1개 과목까지만 출제할 수 있다.

## 제5조(필기 고사 합격)

필기시험에 1급, 2급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면접고사 합격)

필기 고사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한다. 면접시험은 「자격시험 및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은 본 세칙 9조에 따른다.

## 제7조(시험응시 서류)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본 센터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1부
3.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사진 (3×4cm, 최근 6개월 이내)..... 3매
5. 소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8조(무시험 자격심사 응시서류)

자격규정 제4조 3항에 명시한 마음리더십전문가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신청서(본 센터 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1부
4. 재직증명서 ..... 1부
5.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 ..... 1부
6. 마음리더십 임상경력 증빙서류 ..... 1부
7.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외국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제9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본 센터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또는 기관 수련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면접시험을 치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마음리더십전문가 1급
  - ① 자격심사 신청서(본 센터 소정양식)..... 1부
  - ②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센터 발급)..... 1부
  - ③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1부
  - ④ 재직증명서 ..... 1부
  - ⑤ 수련감독자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단, 무시험 자격심사 대상자는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8조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⑥ 사례 슈퍼비전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 ⑦ 교육연수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 ⑧ 감수성훈련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2. 마음리더십전문가2급
  - ① 자격심사 신청서(본 센터 소정양식) ..... 1부
  - ②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센터 발급) ..... 1부
  - ③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1부
  - ④ 사례 슈퍼비전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 ⑤ 교육연수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 ⑥ 감수성훈련 이수증 증빙서류 ..... 1부

제10조(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면접시험과 함께 실시한다.

제11조(부칙)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행상 애매한 사항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